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재무과)

의안번호	제 32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09. 2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른 인용 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 제10조의3제2항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안 제3조)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중 매각 가격의 기준 금액 명시(안 제4조제1항제2호)
- 다. 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에 증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신설(제4조제1항제4호)
- 라. 법령 조문 삭제로 인용규정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 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득·처분 가격을 시행령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으로 용어 통일(안 제4조제2항제3호)
- 바. 법 제92조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대상 및 서식

명시 (안 제6조)

사. 법 조문이동(법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인용내용 변경(안 제11조)

야. 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기준가격, 토지면적)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준시설 (안 제11조제3항)

자. 법 제2조 개정('22.4.20.)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안 제15조, 안 제18조~안 제22조, 안 제30조)

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5항)

카. 영 제32조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3조)

타. 영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6조제6항)

하. 신탁계약서 양식을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안 제39조제2항)

가.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반영

나.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용보험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20일), 별도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개정 2022. 4. 20. 시행 2023. 1. 1.) 및 관련된 다른 법령들의 개정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1)에 따라 연임에서 한차례로 제한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제1항제2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중 매각 가격의 기준 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 제1항제4호 : 법 제16조제2항2)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규정 신설
 - 제1항제3호 : 법령 조문 삭제로 인용규정 변경, 법 제11조 및 영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조→ 법 제11조

- 제2항제3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득·처분 가격을 영 제7조제7항3)에 규정된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로 용어 통일
- 안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서 법 제92조4) 및 영 제52조5)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대상 및 서식 명시
- 안 제11조 : 법 조문 이동 (법 제10조→제10조의2)
- 안 제11조제3항 : 영 제7조6)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한 재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준 시설을 신설함.

- 기준가격 : 취득-10억원/ 처분-10억원
- 토지면적 : 취득-1천제곱미터 / 처분-2천제곱미터

- 안 제30조제5항 신설 : 법 제34조7) 및 영 제13조제3항8), 영 제17조

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제6항9), 영 제35조10)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 안 제33조제2항, 제3항 : 영 제32조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회 → 4회 범위에서
 -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 6회 범위에서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 4회 범위에서
 -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 6회 범위에서

- 안 제36조제6항 신설 : 영 제39조제4항11)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 안 제39조제2항 신설 : 영 제48조제2항12)에 따라 신탁계약서 양식을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

-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 내용의 반영
 - 안 제30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3항
 - 안 제30조제4항 : 법 제34조제2항 → 영 제35조제2항제3호
 - 안 제36조제4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 → 제13조의3제3항

- .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등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 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 로써 → 로서 (안 제31조제1항제1호, 안 제31조제1항제2호, 안 제31조제2항)
 - 같음 → 대신 (안 제5조, 안 제 20조, 안제34조, 안제72조, 안제80조, 제81조)
 - 산출 → 계산 (안 제28조제1항, 안제29조)
 - 의하여 → 따라 (안 제36조제3항제2호, 안 제50조, 안 제72조, 안 제73조제5항, 안 제94조)
 - 에게 → 에 (안 제36조제3항제4호)
 - 에 대하여 → 은(는) (안 제30조제4항, 안 제59조, 안 제84조제3항, 안 제92조제1항제1호)
 - 납부 하게 → 납부하게 (안 제36조제4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관계 법령들의 개정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